

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보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2일	
동물 치료소	명칭		대표자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대상 천연기념물	명칭				
접수	조난(질병 등)일		조난(질병 등)장소		
	조난(질병 등)원인		신고자		
	조난(질병 등)상황				
완치	완치일		방사장소		
	완치상황				
폐사	폐사일		폐사장소		
	폐사원인				
치료경비	청구금액(원)		치료내역		
조치의견	※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		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치료한 동물의 사진 1부 2.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(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보고서 작성 보고인	→ 접수 처리기관 (국가유산청, 시·도 및 시·군·구)	→ 보고 처리기관 (국가유산청, 시·도 및 시·군·구)